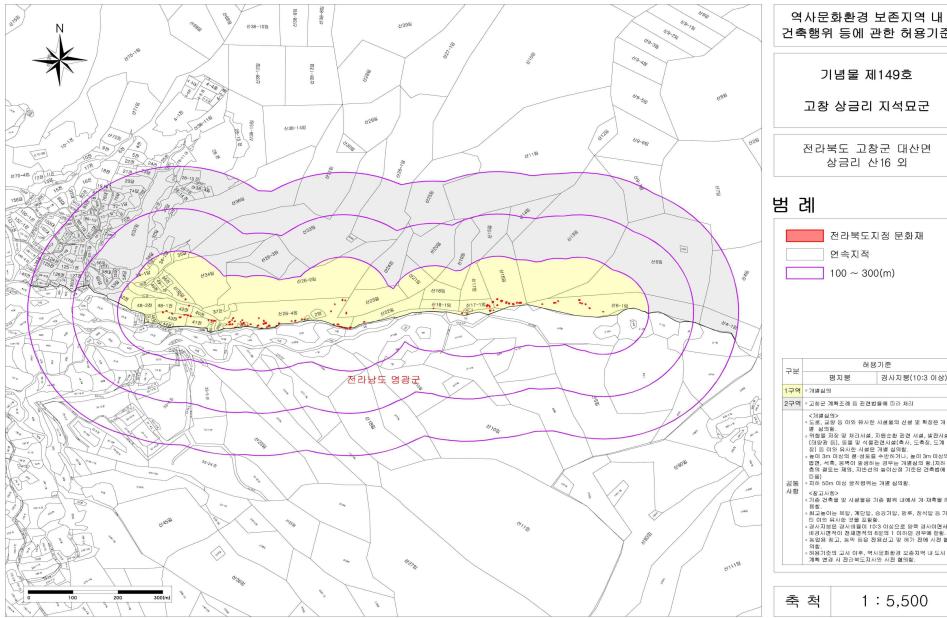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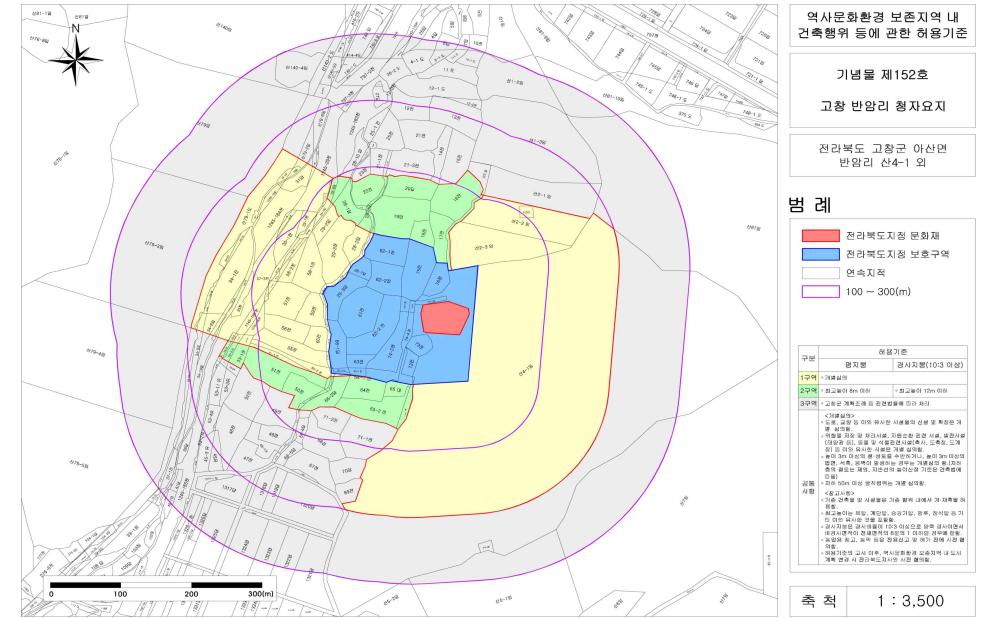


## 5.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(기념물 제149호)



## 6.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(기념물 제152호)

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봉	경사지봉(10:3이상)
1구역	· 개별심의	
2구역	· 고창군 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
<b>&lt;개별심의&gt;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</li> <li>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</li> <li>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.</li> </ul>		
<b>&lt;참고사항&gt;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준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준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/li> <li>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/li> <li>농업용 창고, 농막 등을 전용신고 및 허가 전에 사전 협의함.</li> <li>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.</li> </ul>		

구 分	허용기준	
	평지봉	경사지봉(10:3이상)
1구역	○ 개별심의	
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
3구역	○ 고창군 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
<b>&lt;개별심의&gt;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</li> <li>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</li> <li>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.</li> </ul>		
<b>&lt;참고사항&gt;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준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준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/li> <li>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/li> <li>농업용 창고, 농막 등을 전용신고 및 허가 전에 사전 협의함.</li> <li>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.</li> </ul>		